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년 12월 1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1월 10일, 고성미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2년 12월 1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고성미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 - 느린학습자는 지적장애에 해당되지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을 위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‘경계선지능인’이라고도 불리며,
  - 이들은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에 분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린학습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이 없는 실정으로 이를 장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종 복지정책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음.
  - 이에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지원계획 수립 등 이행체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에서 안 제9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### 나. 검토의견

#### ① 주요 제정 내용

-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
-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.
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
- 안 제5조에서는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6조에서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느린학습자 지원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에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.
- 안 제7조에서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
- 안 제8조에서는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직업 훈련기관 등과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9조에서는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한 경비 지원 및 보조금의 교부 근거 규정을 마련함.

#### ②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에서 정의한 “느린학습자”는 학계에서 “경계선지능인”, “저성취아동”, “경도 인지적 손상자”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서울시 6개 자치구(동대문, 구로, 양천, 노원, 서대문, 서초)가 조례를 제정하였음.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[별표 1]에서 “지적장애인”을 “지능 지수가 70이하인 사람”으로 규정함에 따라 “느린학습자”는 통상 지능검사 기준(IQ) 71부터 84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분류되고 있음
-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가 2019년 실시한 「느린학습자 기초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」에 따르면 느린학습자는 인구의 약 12~14%로 한 학급에 평균 3명, 전국적으로 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, 학업능력은 하위 8% 수준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의가 산만하고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행동으로 또래 아동들에게 소외감을 느끼며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늘 위축되어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.
- 이와 같은 특성으로 느린학습자는 언어능력을 포함하여 일상생활, 학교적응, 학업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,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제도권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- 본 조례가 제정되면 느린학습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느린학습자의 성공적인 자립과 사회참여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